

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

- 삼성·한화·교보·미래에셋·현대차·DB·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

금융위원회는 '23.7.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 삼성·한화·교보·미래에셋·현대차·DB·다우키움(자산합계 순서)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('21.6월) 이후 세 번째* 지정으로서, 7개 금융그룹이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복합기업집단법”)」에 따른 지정 요건**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.

* '21년 :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

'22년 :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다우키움(자산합계 순서)

** ①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, ②금융위 인허가·등록 회사 1개 이상, ③자산총액 5조원 이상 → 지정, ④다만,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**지정 제외**

<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('22년말 기준, 조원, 개) >

그룹명	자산합계 ¹⁾	주력업종 ¹⁾ 및 자산	비주력업종 ¹⁾ 및 자산	소속 금융회사 ²⁾
삼성	451.3	보험(368.4)	여수신·금투(82.6)	37
한화	163.3	보험(147.3)	여수신·금투(14.1)	21
교보	130.6	보험(117.8)	금투(12.6)	11
미래에셋	127.9	금투(81.2)	여수신·보험(43.5)	120
현대차	83.7	여수신(74.2)	금투(9.4)	45
DB	73.2	보험(63.2)	여수신·금투(9.9)	16
다우키움	47.6	금투(39.7)	여수신(6.6)	40

* 1) 국내 금융회사 기준, 2) 해외 금융회사 포함

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, 자산·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.

*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(위험집중, 위험전이 등)을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고, 내부통제·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·준수하여야 합니다.

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*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.

*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·지배구조, 내부통제·위험관리,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·위험집중

③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,

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.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통합 자기자본} (\text{자기자본합계액} - \text{증복자본})}{\text{통합 필요자본} (\text{최소요구자본합계액} + \text{위험가산자본})} \geq 100\%$$

④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(3년 주기)으로 평가("위험관리실태평가")하여야 합니다.

☞ [참고]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

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	책임자	팀 장	나혜영 (02-2100-2591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민 (02-2100-2521)
	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	책임자	실 장	김형원 (02-3145-8200)
		담당자	팀 장	석재승 (02-3145-8204)



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

-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, 자산·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*하여야 합니다.

*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②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·위험관리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·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* (내부통제) 공동·상호간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,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 (위험관리)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·평가·통제 방법,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 배분 방법 등

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·공시 등

-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*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* 자기자본의 5% 해당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

-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·지배구조, ②내부통제·위험관리, ③자본 적정성, ④내부거래·위험집중 등을 보고·공시 하여야 합니다.

④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·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통합 자기자본} (\text{자기자본합계액} - \text{증복자본})}{\text{통합 필요자본} (\text{최소요구자본합계액} + \text{위험가산자본})} \geq 100\%$$

- 매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*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가산(0~20% 비율)하게 됩니다.

* ①계열회사 위험(30%), ②상호연계성(50%) 및 ③내부통제·위험관리(20%) 등을 평가하여 그룹별 평가등급 확정(1⁺~5⁻, 총 15등급)

[5]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평가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위험관리 실태평가*(3년주기 정기종합평가)를 받아야 합니다.

* ①내부통제체계, ②위험관리체계, ③자본적정성, ④위험집중·내부거래, ⑤소유구조·위험전이 등 5개 분야 정성평가로 이루어짐

[6]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* 금융당국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%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